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
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황철규 · 전병주 부위원장님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강동구 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이종태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‘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
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
겠습니다.
- 지난 2025년 5월 15일에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
에 따른 일괄개정조례」에 따라 조례 제명이 ‘시립유치원’에서 ‘공립유
치원’으로 일괄 개정되었습니다.
- 이에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 중 제1조, 제2조제
1항 및 부칙 제2조의 ‘서울특별시립’을 ‘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’으로
개정하고, 인용 중인 상위법령 조항 등을 현행화하기 위해 본 조례
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.

-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첫째, 조례의 제명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립유치원”을 “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”으로 하고, 제2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립유치원”을 “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”으로 하였습니다.

- 둘째, 본 조례 부칙 제2조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3제4항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3제6항”으로 하고, “「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”로 하였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